

인천 검단신도시 AB6블록 한신더휴 기관추천 특별 공급 관련 안내문(안)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8층 9개동 총 936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m)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배정 세대수	입주예 정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74A	74.2658	21.1551	95.4209	44.9353	140.3562	25(10)	'21년 8월 (예정)
	74B	74.4161	21.8384	96.2545	45.0263	141.2807	7(3)	
	84A	84.3400	24.0316	108.3716	51.0308	159.4024	24(11)	
	84B	84.1588	24.2191	108.3779	50.9212	159.2991	36(13)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해당관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계
		74A	74B	84A	84B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3 (1)	1 (1)	2 (1)	4 (1)	10 (4)
		수도권	2 (1)	-	2 (1)	3 (1)	7 (3)
		소계	5 (2)	1 (1)	4 (2)	7 (2)	17 (7)
	장애인	인천광역시	3 (1)	1 (1)	2 (1)	2 (1)	8 (4)
		서울특별시	1 (1)	1	1 (1)	2 (1)	5 (3)
		경기도	1	-	1 (1)	2 (1)	4 (2)
		소계	5 (2)	2 (1)	4 (3)	6 (3)	17 (9)
	장기복무 (10년이상)군인	인천광역시	3 (1)	1	2 (1)	3 (1)	9 (3)
		수도권	2 (1)	1	2 (1)	3 (1)	8 (3)
		소계	5 (2)	2	4 (2)	6 (2)	17 (6)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천광역시	2 (1)	1	2 (1)	3 (1)	8 (3)
		수도권	2	-	2	2 (1)	6 (1)
		소계	4 (1)	1	4 (1)	5 (2)	14 (4)
	북한이탈주민	인천광역시	1 (1)	-	1	1 (1)	3 (2)
		수도권	-	-	1	1	2
		소계	1 (1)	-	2	2 (1)	5 (2)
	중소기업 근로자	인천광역시	2 (1)	1 (1)	2 (1)	4 (1)	9 (4)
		수도권	2 (1)	-	2 (1)	4 (1)	8 (3)
		소계	4 (2)	1 (1)	4 (2)	8 (2)	17 (7)
	우수선수	인천광역시	1	-	1 (1)	1 (1)	3 (2)
수도권		-	-	1	1	2	
소계		1	-	2 (1)	2 (1)	5 (2)	
총 계		25 (10)	7 (3)	24 (11)	36 (13)	92 (37)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18.12.13.(목)	일간신문 및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홈페이지 (www.gd-thehue.com)
견본주택 개관	2018.12.14.(금)	인천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 한신더휴 견본주택
특별공급 접수일시	2018.12.19.(수)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사이트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19.12.28.(금)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아파트 투유)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IV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8.12.13.(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www.gd-thehue.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12.13.(목)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당 사업지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선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 3)
 - “세대주, 세대원, 세대원의 배우자”에서 청약신청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으로 개정
- 2) 개정 이후 분양권 등의 소유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제외(개정안 제2조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보며,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 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 3)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 제외(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5항)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을 성년자로 한정 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간주(제2조제3호)하여 공급대상에 포함
- 4)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개정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를 세대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일정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당 사업지 해당)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
- 5) 주택공급계약서에 전매제한기간 표시 의무화(개정안 제59조제3항)
 -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V 참고 자료

역, 상업지구, 학교는 다 누리고 공원까지 더 누리는

水 水 水 높은 검단 중심의 단 한 자리!

HAPPY HUE LIFE

Eco Premium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인접, 환경생활 특권

- 단지 북쪽 수변공원 및 인근 역사공원(해정) 등 다수의 공원과 맞닿은 자리
- 단지 옆 약 3km의 녹지가 이어지는 쾌적한 주거환경

Edu Premium
도보거리 유·초·중·고로 완성된 학교

- 도보거리 초·중·고 및 유치원(해정)이 인접한 안전 교육환경
- 2개의 영어마을이 인근에 자리한 교육특 최적화된 자리

Central Premium
역, 상업지구, 업무지구까지 한결같은 생활

- 인천지하철 1호선 신철역(해정)이 인접한 역세권 입지
- 상업지구/북스트 아울렛스/헬싱타운/업무지구(해정) 등 한결같은 라이프

Brand Premium
차별화된 설계의 브랜드 아파트

- 단지 내 공원(해정, 4bay, 알파돔/팬트리(일부세대별) 혁신 설계
- 68년 주택건설의 명가 한신더휴의 노하우가 담긴 브랜드 프리미엄

* 단지 전체 또는 소위까지의 이미지를 중기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단지의 계획 사항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설명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설명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 교육특권, 상업특권, 역세권,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녹지, 생활 편의시설 등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입주 시에 해당 단지의 계획 사항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설명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설명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 교육특권, 상업특권, 역세권,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녹지, 생활 편의시설 등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년 주택건설의 명가
한신공영(주)

- 2018년 시장능력평가 15위
- 2017년 미래선도 주택부문 최우수상(매일경제)
- 2018년 부동산부문 우수상(문화일보)
- 2014년 주거가치부문 TV대상(한국경제)
- 2013년 주거부문 전국 10위(국토교통부)



| 전용 74㎡ / 84㎡ 총 936세대 |



- 과천주역 - 인천 차고 원당동 329번지
- 울보동 - 경기도 김포시 동부로 20

| 문의 1522-9345 |

사명: **대한주택건설(주)** | 유자: **(주)보양종합건설** | 사명: **한신공영(주)**

* 본 계약서에 사용된 모든 약어는 본 조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용어집(본 조약 2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본 조약(본 계약서)에 실려 있습니다. * 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본 조약(본 계약서)에 실려 있습니다.



검단 중심의 **단한자리** 이것이 **★준차에**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AB 68L



분양문의 : 1522-9345